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12 선고 2024가단503019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8.

판 결 선 고 2024. 6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2,000,000원 및 그중 72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3. 6. 12.부터,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3. 7. 14.부터 각 2023. 10. 6.까지는 연 4.6%, 각 그다음 날부터 2024. 1. 30.까지는 연 6%,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)

판사 김동혁

별지